O 내각부령/경제산업성령 제2호

소비자 피해방지 및 그 회복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1년 법률 제72호)의 일부시행 및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예탁 등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2023년 정령 제22호)의 시행에 따라, 그리고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1976년 법률 제57호) 및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1976년 정령 제295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리고 같은 법 및 같은 령을 실시하기 위해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명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23년 2월 1일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경제산업대신 니시무라 야스토시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명령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1976년 통상산업성령 제8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 표에 따라, 개정전 란에 열거하는 규정의 밑줄 친 부분을 여기에 순차 대응하는 개정후 란에 열거하는 규정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개정하며, 개정전 란 및 개정후 란에 대응하여 열거하는 그 표기부분(연속된 다른 규정과 기호에 의해 일괄하여 열거하는 규정은 그 표기부분에 관한 기재)에 이중으로 밑줄 친 규정(이하, “대상규정”이라고 한다)은 개정전 란에 열거하는 대상규정을 개정후 란에 열거하는 대상규정으로 이동하고, 개정전 란에 열거하는 대상규정에서 개정후 란에 이에 대응하는 것을 열거하지 않은 것은 이를 삭제하고, 개정후 란에 열거하는 대상규정에서 개정전 란에 이에 대응하는 것을 열거하지 않은 것은 이를 추가한다.

|  |  |
| --- | --- |
| 개정 후 | 개정 전 |
| 목차제1장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1. 정의(제1조-제4조)
2. 방문판매(제5조-제22조)
3. 통신판매(제23조-제44조)
4. 전화권유판매(제45조-제66조)
5. 잡칙(제67조)

제2장 연쇄판매거래(제68조-제90조)제3장 연쇄 계속적 역무제공(제91조-제109조)제4장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제110조-제131조)제5장 방문구매(제132조-제151조)제6장 잡칙(제151조-제152조)잡칙(유인방법에 관계되는 전자적 방법)제2조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1976년 정령 제295호.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조 제1호 및 제2호,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5조와 제19조의 전자적 방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화번호를 송수신하기 위해 이용하여 전자적 기록을 상대방 사용에 관한 휴대하여 사용하는 통신단말기에 송신하는 방법(타인에게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전자메일을 송신하는 방법(타인에게 위탁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삼. 전 각호에 규정하는 것 외 그 수신하는 자를 특정하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용되는 전기통신(전기통신사업법(1984년 법률 제86호)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을 말한다)을 송신하는 방법(타인에게 위탁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전자적 기록)제4조 영 제2조 제1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기록은 HTML(송신 가능화 (저작권법 (1970년 법률 제48호) 제2조 제1항 제9호의 5에 규정하는 송신가능화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정보를 전자계산기에 의한 열람 용도로 제공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의 표시배열, 그 외 모습을 나타냄과 동시에, 해당 정보 이외의 정보로 송신가능화 된 것의 송신요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자적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문자, 그 외 기호 및 그 체계로서, 국제적인 표준이 된 것을 말한다) 그 외 기호 및 그 체계로 작성된 전자적 기록으로 송신가능화 된 것으로서, 인터넷을 이용한 열람 시, 하나의 송신원 식별부호(같은 법 제47조의 5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송신원 식별부호를 말한다)에 의해 특정된 하나의 페이지로서 전자계산기의 영상면에 표시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에서 서면의 교부 등)제5조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구 생략][조를 삭제한다]제6조 법 제4조 제1항 또는 법 제5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이하, 이 조에서 “서면”이라고 한다)은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각각 동표 우측 란의 기준에 합치한 것이어야 한다. [표 생략][2/3 생략]제7조 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5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에 기록하는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항, 제3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일. 상품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 등(법 제9조 제1항의 신청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는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상품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나~사 생략] |
| 이. 권리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권리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나~아 생략] |
| 삼. 역무제공계약의 신청철회 또는 역무제공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 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역무제공계약의 신청철회 또는 역무제공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나~사 생략] |

[2~6 생략](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해야 하는 서면의 교부에 관계되는 전자적 방법)제8조 법 제4조 제2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자정보처리조직(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와 신청을 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를 전자통신회선으로 접속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제11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는 방법 중 “가” 또는 “나”에 열거하는 것가.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와 신청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를 접속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해당 신청을 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나.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신청한 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해당 신청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이. 전자적 기록매체(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 용도로 제공되는 것에 관한 기록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지고 조제하는 파일에 서면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것을 교부하는 방법2 전항에 열거하는 방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일. 신청한 자가 파일 기록을 출력함으로써 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일 것이. 파일에 기록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변경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삼. 전항 제1호 “나”에 열거하는 방법은 파일에 기록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내용 또는 기록한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3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제1항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해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교부를 대신하여 해당 서면을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제공할 때는 신청한 자가 해당 사항을 명료하게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해야 하는 서면의 교부에 관계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제9조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나타내야 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조 제1항에 열거하는 방법 중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이. 파일 기록 방식(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 취득 시 설명 및 확인 등)제10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전조에 열거하는 사항을 나타낼 때, 신청한 자에게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일. 신청한 자가 이 항의 설명 및 제3항의 확인을 받은 다음,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하지 않으면 동조 제1항의 서면이 교부될 것이.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은 동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며, 신청한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일 것삼. 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제8조 제1항 제1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한정한다)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 기록이 되었을 때 해당 신청한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기록이 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철회 등을 할 수 없게 될 것사.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계산기(그 영상면의 최대 지름을 센티미터 단위로 나타낸 수치에서 2.54로 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수치가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제공을 받기 위해 전자계산기를 스스로 조작(해당 제공이 완결될 때까지 조작을 말한다. 제3항 제1호에서 같다)할 수 있는 신청을 한 자에 한해,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2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전항의 설명을 할 때, 신청한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표현을 이용해야 한다. 3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제1항의 설명을 한 다음, 아래 열거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일. 신청한 자가 전자메일 송수신, 기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조작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서, 해당 열람을 위해 필요한 전자계산기 및 전자메일주소(전자메일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 이. 신청한 자가 열람을 위해 필요한 전자계산기에 관한 사이버 보안(사이버 보안 기본법(2014년 법률 제104호) 제2조에 규정하는 사이버 보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삼. 신청한 자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해당 신청을 한 자가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도 전자메일에 의해 송신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유무 및 해당 송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전자메일주소4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전항의 확인을 할 때, 신청한 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계산기를 스스로 조작하여 해당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영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웹페이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행해야 한다. 5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신청한 자가 영 제4조 제1항의 서면 등에 해당 신청을 한자의 성명 및 제1항의 설명내용을 이해한 내용을 기입함으로써,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얻도록 한다. 이 경우, 판매사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기호의 기입, 기타 해당 신청을 한 자의 해당 승낙에 관한 인식이 명확해지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6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신청한 자가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전자메일의 송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한 자가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과 동시에 송신해야 한다. 7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제1항의 설명 및 제3항의 확인을 한 다음,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얻었을 때, 신청한 자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을 할 때까지, 해당 승낙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해당 승낙을 서면에 의해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 서면의 사본을 포함한다)을 교부해야 한다.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해야 하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승낙의 취득)제11조 영 제4조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중 “가” 또는 “나”에 열거하는 것가. 신청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영 제4조 제1항의 승낙 또는 동조 제2항의 신청(이하, 이 항에서 “승낙 등”이라고 한다)할 내용을 송신하고, 해당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나.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제9조에 열거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신청한 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해당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승낙 등을 할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이.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해 조제하는 파일에 승낙 등을 할 내용을 기록한 것을 교부하는 방법2 전항에 열거하는 방법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파일 기록을 출력함으로써 서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제12조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전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 방법으로 신청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되면서, 해당 신청한 자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행한다. (법 제4조 제2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제3조 법 제4조 제3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제8조 제1항 제2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한다. (방문판매에 있어서 계약체결 시 교부서면의 기재사항)제14조 법 제5조 제2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일.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와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 판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체결을 담당한 자의 성명삼.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체결 연월일사. 상품 및 상품의 상표 또는 제조업자오. 상품에 형식이 있을 때는 해당 형식육. 상품의 수량칠. 인도된 상품이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한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의 판매업자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내용팔.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내용구. 전2호에 열거하는 것 외 특약이 있을 때는 그 내용(법 제5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5조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규정은 법 제5조 제3항에서 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및 “법 제4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신청한 자”는 “구매자 또는 역무제공을 받는 자”로 변경한다. 제16조/제17조 [생략](방문판매에서의 금지행위)제18조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사 생략]오. 방문판매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에 열거하는 서면으로서, 구매자 또는 역무제공을 받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구매자 등”이라고 한다)가 생명보험에 관한 계약 또는 생명공제에 관한 계약(이하, “생명보험계약 등”이라고 한다)의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가 됨에 동의하는 내용이 기재된 것(해당 생명보험계약 등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이 빨간 틀 안에 일본산업규격 Z8305에 규정하는 8포인트 이상 크기의 빨간 글씨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해당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에 관한 서명 또는 날인과는 별도로 해당 생명보험계약 등에 관한 서명 및 날인을 하는 칸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 구매자 등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할 것가. 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5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나. [생략][육~팔 생략]구. 법 제4조 제2항(법 제5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법 제5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할 때,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할 것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고객 또는 구매자 혹은 역무제공을 받는 자에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나. 고객 또는 구매업자 혹은 역무제공을 받는 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다. 위협하여 당혹하게 하는 행위(법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라.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마. 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5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교부에 대해, 비용의 징수 및 기타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에 열거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바. 제10조 제3항을 확인 시, 허위, 기타 부정수단에 의해 고객 또는 구매자 혹은 역무제공을 받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사. 제10조 제3항의 확인을 하지 않거나,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고객 또는 구매자 혹은 역무제공을 받는 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아. 허위, 기타 부정수단에 의해 고객 또는 구매자 혹은 역무제공을 받는 자의 승낙을 대행하거나,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의 수령을 대행하는 행위자. “가”에서 “아”까지 열거하는 것 외 고객 또는 구매자 혹은 역무제공을 받는 자의 뜻에 반하여 승낙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수령하게 하는 행위(업무를 통괄하는 자에 준하는 자)제19조 영 제6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부장, 차장, 과장, 기타 어떤 명칭을 가진 자인지 불문하고, 이들의 호에 규정하는 업무를 통괄하는 자의 직무를 일상적으로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 기타 실질적으로 해당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한다. (영 제7조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제20조 영 제7조의 해당 기타 법인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법인가. 해당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영 제7조의 사용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대표권을 가진 임원인 법인[나/다 생략]이.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법인가. [생략]나. 해당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임원(영 제7조의 임원을 말한다. “다” 및 “라”에서 같다) 또는 그 사용인이 대표권을 가진 임원인 법인[다/라 생략]삼. [생략][2/3 생략]제21조/제22조 [생략](통신판매에 대한 광고)제23조 법 제11조 제6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이 생략]삼.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외국법인 또는 외국에 주소를 가진 개인으로서, 국내에 그 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소, 사무소 및 기타 이들에 준하는 것(이하, 이 호, 제71조 제3호 및 제112조 제3호에서 “사무소 등”이라고 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 등의 소재장소 및 전화번호[사~십 생략]제24조 [생략]제25조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호 및 제23조 제4호에 정하는 구매자 또는 역무제공을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경우에는 그 금전을 전부 표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 경우 법 제11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정하는 사항(제23조 제6호에서 제10호까지 열거하는 사항과 법 제15조의 3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도는 매매계약 해제(이하, 이 조에서 “신청철회 등”이라고 한다)의 가부, 신청철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철회 등이 가능한 기간, 그 외 신청철회가 가능해지는 조건 및 상품 또는 특정권리의 거래 또는 반환에 요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구매자 또는 역무제공을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전의 전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정하는 사항(제23조 제4호 및 제6호에서 제10호까지 열거하는 사항 및 법 제15조의 3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철회 등의 가부, 신청철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철회가 가능한 기간, 그 외 신청철회가 가능해지는 조건 및 상품 또는 특정권리의 거래 또는 반환에 요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에 관한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불이 상품인도 혹은 권리이전 또는 역무제공 전인 경우에는 상품 혹은 권리의 대금 또는 역무 대가의 지불시기,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관한 상품을 송부하지 않을 경우 혹은 권리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역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3호에 열거하는 사항 및 인도된 상품이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해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판매업자가 그 부적합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4 생략](과대광고 등의 금지)제26조 [생략](전자메일광고에 관계되는 전자적 방법)제27조 법 제12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전자적 방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이 생략][호를 삭제한다]제28조/제29조 [생략](기록의 보존)제30조 법 제12조의 3 제3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전자적 방법은 제외한다)에 의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거나, 또는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승낙 또는 청구마다 해당 승낙 또는 청구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이하, 이 조, 제35조, 제75조 및 제76조에서 “서면 등”이라고 한다). 단,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해당 승낙을 얻거나, 또는 청구를 받기 위해 정형적인 내용을 표시하고 있으면서, 해당 승낙을 얻거나, 또는 청구를 받았을 때 해당 승낙 또는 청구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일람성 있는 전자적 기록으로 자동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을 이용한 경우로서, 해당 정형적인 내용의 표시에 있어서, 해당 전자계산기의 조작이 해당 상대방에게 통신판매 전자메일 광고를 하는 승낙하거나, 또는 청구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승낙을 얻거나, 또는 청구를 받기 위해 표시한 정형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서면 등 및 해당 내용이 표시된 시기를 나타내는 서면 등이. [생략]2 [생략]제31조~제38조 [생략](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시해야 하는 서면 통지에 관계되는 전자적 방법)제39조 법 제13조 제2항의 전자적 방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자정보처리조직(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와 신청을 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를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제41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는 방법 중 “가”, “나” 또는 “다”에 열거하는 것[가~다 생략]이. 전자적 기록매체에 의해 일정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해 둘 수 있는 것으로서 조제하는 파일에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것을 교부하는 방법[2/3 생략](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해야 하는 서면 통지에 관계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제40조 [생략](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해야 하는 서면 통지에 관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승낙의 취득)제41조 영 제8조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에 열거한다. 일. 신청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로부터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영 제8조 제1항의 승낙 또는 동조 제2항의 신청(이하, 이 항에서 “승낙 등”이라고 한다)을 하는 내용을 송신하고, 해당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나.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제40조에 열거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신청한 자의 열람에 제공하며, 해당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승낙 등을 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2 전항에 열거하는 방법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파일에 기록을 출력함으로써 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통신판매에서의 금지행위)제42조 [생략](법 제15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제43조 법 제15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15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정지를 명 받은 업무의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 (신청철회 등에 대한 특약을 표시하는 방법)제44조 [생략](전화권유판매에서의 서면 교부 등)제45조 법 제18조 제1항 제6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일~구 생략][조를 삭제한다]제46조 법 제18조 제1항 또는 법 제19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이하, 이 조에서 “서면”이라고 한다)은 다음 표 좌측 란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각각 동표 우측 란의 기준에 합치한 것이어야 한다. [표 생략][2/3 생략]제47조 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하는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항, 제3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일. 상품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18조 제1항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 등(법 제24조 제1항의 신청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6조에서 같다)는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상품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나~사 생략] |
| 이. 권리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18조 제1항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 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권리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나~아 생략] |
| 삼. 역무제공계약의 신청철회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18조 제1항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 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역무제공계약의 신청철회 또는 역무제공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나~사 생략] |

[2~6 생략](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해야 하는 서면의 교부에 관계되는 전자적 방법)제48조 법 제18조 제2항의 전자적 방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자정보처리조직(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와 신청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를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제51조 및 제61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는 방법 중 “가” 또는 “나”에 열거하는 것가.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와 신청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를 접속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해당 신청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나.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신청한 자의 열람에 제공학고, 해당 신청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이.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해 조제하는 파일에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것을 교부하는 방법2 전항에 열거하는 방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일. 신청한 자가 파일 기록을 출력함으로써 서면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 파일에 기록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변경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삼. 전항 제1호 “나”에 열거하는 방법은 파일에 기록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할 내용 또는 기록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3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제1항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해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교부를 대신하여 해당 서면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제공할 때는 신청한 자가 해당 사항을 명료하게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해야 하는 서면의 교부에 관계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제49조 영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나타내야 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조 제1항에 열거하는 방법 중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이. 파일 기록 방식(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 취득 시 설명 및 확인 등)제50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전조에 열거하는 사항을 나타낼 때, 신청한 자에게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일. 신청한 자가 이 항의 설명 및 제3항의 확인을 받은 다음,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하지 않으면 동조 제1항의 서면이 교부될 것이.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은 동조 제1항의 서면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이면서, 신청한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일 것 삼. 법 제18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제48조 제1항 제1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한정한다)에 의해 제공할 경우에는 신청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 기록이 되었을 때 해당 신청을 한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해당 기록이 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철회 등을 할 수 없게 될 것사.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계산기(그 영상면의 최대 지름을 센티미터 단위로 나타낸 수치에서 2.54를 빼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수치가 5이상인 전자계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제공을 받기 위해 전자계산기를 스스로 조작(해당 제공이 완결될 때까지 조작을 말한다. 제3항 제1호에서 같다)할 수 있는 신청을 한 자에 한해,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2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전항의 설명을 할 때, 신청한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3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제1항의 설명을 한 다음, 아래 열거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일. 신청한 자가 전자메일의 송수신 및 기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조작을 스스로 행할 수 있으면서, 해당 신청한 자가 해당 열람을 위해 필요한 전자계산기 및 전자메일주소(전자메일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 신청한 자가 열람을 위해 필요한 전자계산기에 관한 사이버 보안을 확보하고 있을 것삼. 신청한 자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해당 신청한 자가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도 전자메일에 의해 송신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유무 및 해당 송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자의 전자메일주소4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전항의 확인을 할 때, 신청한 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계산기를 스스로 조작하고, 해당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영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웹페이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행해야 한다. 5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신청한 자가 영 제9조 제1항의 서면 등에 해당 신청을 한 자의 성명 및 제1항의 설명내용을 이해한 내용을 기입함으로써,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얻도록 한다. 이 경우, 판매사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기호의 기입, 그 외 해당 신청한 자의 해당 승낙에 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6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신청한 자가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전자메일 송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한 자가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과 동시에 송신해야 한다. 7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제1항의 설명 및 제3항의 확인을 한 다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얻을 때, 신청한 자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을 할 때까지, 해당 승낙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해당 승낙을 서면에 의해 얻은 경우에는 해당 서면의 사본을 포함한다)을 교부해야 한다.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해야 하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승낙의 취득)제51조 영 제9조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에 열거한다. 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중 “가” 또는 “나”에 열거하는 것가. 신청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로부터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판매어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영 제9조 제1항의 승낙 또는 동조 제2항의 신청(이하, 이 항에서 “승낙 등”이라고 한다)을 할 내용을 송신하고, 해당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나.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제49조에 열거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신청한 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해당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승낙 등을 할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이.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해 조제하는 파일에 승낙 등을 할 내용을 기록한 것을 교부하는 방법2 전항에 열거하는 방법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파일 기록을 출력함으로써 서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영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제52조 영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전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 방법으로 신청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되면서, 해당 신청한 자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한다. (법 제18조 제3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제53조 법 제18조 제3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화권유판매에서 계약체결 시 교부서면의 기재사항)제54조 법 제19조 제2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일.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와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체결을 담당한 자의 성명삼.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체결 연월일사. 상품명 및 상품의 상표 또는 제조자명오. 상품에 형식이 있을 때는 해당 형식육. 상품의 수량칠. 인도된 상품이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해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의 판매업자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내용팔.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내용구. 전2호에 열거하는 것 외 특약이 있을 때는 그 내용(법 제1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55조 제48조에서 제53조까지 규정은 법 제18조 제3항에서 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및 “법 제18조 제1항”은 “법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신청한 자”는 “구매자 또는 역무제공을 받는 자”로 변경한다. (전화권유판매에서 승낙 등의 통지)제56조 법 제20조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육 생략]제57조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한 자에게 서면에 의해 통지할 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일/이 생략]2 [생략](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 등의 통지에 관계되는 전자적 방법)제58조 법 제20조 제2항의 전자적 방법은 제48조 제1항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에 열거하는 방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일. 신청한 자가 파일 기록을 출력함으로써 서면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 파일에 기록된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해 변경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삼. 제48조 제1항 제1호 “나”에 열거된 방법은 파일에 기록된 서면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할 내용 또는 기록한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3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제1항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해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통지를 대신하여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제공할 때는 신청한 자가 해당 사항을 명료하게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 등 통지에 관계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제59조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나타내야 할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제48조 제1항에 열거하는 방법 중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이. 파일 기록 방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 취득 시 설명 및 확인 등)제60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전조에 열거하는 사항을 나타낼 때, 신청한 자에게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일. 신청한 자가 이 항의 설명 및 제3항의 확인을 받은 다음,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하지 않으면, 동조 제1항의 서면에 의해 통지될 것이.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은 동조 제1항의 서면에 의한 통지에 기록해야 할 사항이면서, 신청한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일 것삼.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계산기(그 영상면의 최대 지름을 센티미터 단위로 나타낸 수치에서 2.54를 빼고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수치가 5 이상인 전자계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제공을 받기 위해 전자계산기를 스스로 조작(해당 제공이 완결될 때까지 조작을 말한다. 제3항 제1호에서 같다)할 수 있는 신청을 한 자에 한해,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2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전항의 설명을 할 때, 신청한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3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제1항의 설명을 한 다음, 아래 열거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일. 신청을 한 자가 전자메일의 송수신, 그 외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조작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서, 해당 신청을 한 자가 해당 열람을 위해 필요한 전자계산기 및 전자메일주소(전자메일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 이. 신청한 자가 열람을 위해 필요한 전자계산기에 관한 사이버 보안을 확보하고 있을 것삼. 신청을 한 자가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해당 신청한 자가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도 전자메일에 의해 송신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 유무 및 해당 송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자의 전자메일주소4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전항의 확인을 할 때, 신청한 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계산기를 스스로 조작하여, 해당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영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웹페이지 등을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 행해야 한다. 5 판매사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신청한 자가 영 제10조 제1항의 서면 등에 해당 신청을 한 자의 성명 및 제1항의 설명 내용을 이해한 내용을 기입함으로써,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얻기로 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기호의 기입, 그 외 해당 신청을 한 자의 해당 승낙에 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6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신청한 자가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전자메일의 송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한 자가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과 동시에 송신해야 한다. 7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제1항의 설명 및 제3항의 확인을 한 다음,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얻었을 때, 신청한 자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을 할 때까지, 해당 승낙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해당 승낙을 서면에 의해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 서면의 사본을 포함한다)을 교부해야 한다.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 등 통지에 관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승낙의 취득)제61조 영 제10조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중 “가” 또는 “나”에 열거하는 것가. 신청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영 제10조 제1항의 승낙 또는 동조 제2항의 신청(이하, 이 항에서 “승낙 등”이라고 한다)을 하는 내용을 송신하고, 해당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나.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제59조에 열거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신청한 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해당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승낙 등을 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이.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해 조제하는 파일에 승낙 등을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을 교부하는 방법2 전항에 열거하는 방법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파일 기록을 출력함으로써 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제62조/제53조 [생략](전화권유판매에서의 금지행위)제64조 법 제22조 제1항 제5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육 생략]칠. 법 제17조 제2항(법 제1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법 제1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해, 또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하는 서면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할 때,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할 것 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고객 또는 구매자 혹은 역무제공을 받는 자에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나. 고객 또는 구매자 혹은 역무제공을 받는 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다. 위협하여 당혹하게 하는 행위(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라.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마. 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교부 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통지에 대해, 비용 징수, 그 외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에 열거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바. 제50조 제3항 또는 제60조 제3항을 확인 시, 허위, 기타 부정수단에 의해 고객 또는 구매자 혹은 역무제공을 받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사. 제50조 제3항 또는 제60조 제3항의 확인을 하지 않거나,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고객 또는 구매자 혹은 역무제공을 받는 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아. 허위, 기타 부정수단에 의해 고객 또는 구매자 혹은 역무제공을 받는 자의 승낙을 대행하거나,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의 수령을 대행하는 행위자. “가”에서 “아”까지 열거하는 것 외 고객 또는 구매자 혹은 역무제공을 받는 자의 뜻에 반하여 승낙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수령하게 하는 행위(법 제23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제65조 법 제23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2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정지를 명 받은 업무의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66조/제67조 [생략](특정이익)제68조 법 제33조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중 하나로 한다. 일. 상품(법 제33조 제1항의 상품을 말한다. 다음 조, 제70조, 제73조, 제80조 및 제90조를 제외하고,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재판매, 수탁판매 혹은 판매를 알선하는 다른 사람 또는 동종 역무의 제공 혹은 역무의 제공을 알선하는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거래요금에 의해 발생하는 것일 것[이/삼 생략]제69조~제72조 [생략](과대광고 등의 금지)제73조 법 제36조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오 생략]육. 연쇄판매업에 관한 연쇄판매거래에 대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법 제40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및 법 제40조의 2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제74조~제79조 [생략]제80조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서면(이하, 이 조에서 “계약서면”이라고 한다)에는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표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사항 | 내용 |
| [일~삼 생략] |
| 사. 법 제4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에 관한 연쇄판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오~칠 생략] | [가/나 생략]다. “가”에 기재한 사항에 의해 연쇄판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가 되기 전에, 연쇄판매를 하는 자가 연쇄판매가입자에게 이미 연쇄판매업에 관한 상품판매 등을 했을 때,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쇄판매가입자는 상품판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1)~(3) 생략](4) 영 제23조에서 정할 때[라~바 생략] |

[2~4 생략](법 제3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해야 하는 서면의 교부에 관계되는 전자적 방법)제81조 법 제37조 제3항의 전자적 방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자정보처리조직(연쇄판매업을 하는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와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를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제84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는 방법 중 “가” 또는 “나”에 열거하는 것가.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와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를 접속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해당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나.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의 열람에 제공하고, 해당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이.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해 조제하는 파일에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것을 교부하는 방법2 전항에 열거하는 방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일.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이 파일 기록을 출력함으로써 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일 것이. 파일에 기록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변경이 수행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삼. 전항 제1호 “나”에 열거하는 방법은 파일에 기록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의 사용에 관한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할 내용 또는 기록한 내용을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3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해 법 제3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교부를 대신하여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제공할 때,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이 해당 사항을 명료하게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법 제3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해야 하는 서면교부에 관계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제82조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나타내야 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조 제1항에 열거하는 방법 중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가 사용하는 것이. 파일 기록 방법(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 취득 시의 설명 및 확인 등)제83조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조에 열거하는 사항을 나타낼 때,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에게 아래 열거하는 사항(법 제37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설명해야 한다. 일.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이 이 항의 설명 및 제3항의 확인을 받은 다음,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하지 않으면, 동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서면이 교부될 것이.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면서,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일 것삼. 법 제37조 제2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제81조 제1항 제1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한정한다)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 기록이 되었을 때 해당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해당 기록이 된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쇄판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될 것 사.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계산기(그 영상면의 최대 지름을 센티미터 단위로 나타낸 수치에서 2.54를 빼고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수치가 5이상인 전자계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제공을 받기 위해 전자계산기를 스스로 조작(해당 제공이 완결될 때까지 조작을 말한다. 제3항 제1호에서 같다)할 수 있는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에 한해,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2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항의 설명을 할 때,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3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제1항의 설명을 한 다음, 아래 열거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일.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이 전자메일 송수신, 기타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조작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서, 해당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이 해당 열람을 위해 필요한 전자계산기 및 전자메일주소(전자메일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이 열람을 위해 필요한 전자계산기에 관한 사이버 보안을 확보하고 있을 것삼.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이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해당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이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도 전자메일에 의해 송신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유무 및 해당 송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자의 전자메일주소4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항의 확인을 할 때,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계산기를 스스로 조작하여, 해당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의 영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웹페이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행해야 한다. 5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이 영 제21조 제1항의 서면 등에 해당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의 성명 및 제1항의 설명 내용을 이해한 내용을 기입함으로써,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얻는다. 이 경우,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기호 기입, 기타 해당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고 하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의 해당 승낙에 관한 인식을 명확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6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이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전자메일 송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이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과 동시에 송신해야 한다. 7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제1항의 설명 및 제3항의 확인을 한 다음,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얻었을 때,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때까지 해당 승낙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해당 승낙을 서면에 의해 얻은 경우에는 해당 서면의 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교부해야 한다. 단, 법 제37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낙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해야 하는 서면 교부에 관계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승낙의 취득)제84조 영 제21조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아래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중 “가” 또는 “나”에 열거하는 것가.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영 제21조 제1항의 승낙 또는 동조 제2항의 신청(이하, 이 항에서 “승낙 등”이라고 한다)을 하는 내용을 송신하고, 해당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나.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제82조에 열거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의 열람에 제공하고, 해당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승낙 등을 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이.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해 조제하는 파일에 승낙 등을 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을 교부하는 방법2 전항에 열거하는 방법은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가 파일 기록을 출력함으로써 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영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제85조 영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전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 방법으로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의 사용에 관한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되면서, 해당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행한다. (법 제37조 제4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제86조 법 제37조 제4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한다. (연쇄판매거래에서의 금지행위)제87조 법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삼 생략]사. 그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가 제3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 경우, 그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것을 부추기거나, 또는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 혹은 허위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할 것을 부추기는 것[오~십일 생략]십이.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때,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는 것가.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에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에 관계되는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나.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다. 위협하여 당혹하게 하는 행위(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라. 법 제3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교부에 대해, 비용 징수, 그 외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에 열거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마. 제83조 제3항의 확인 시, 허위, 기타 부정 수단에 의해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바. 제83조 제3항의 확인을 하지 않거나, 또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사. 허위, 기타 부정 수단에 의해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의 승낙을 대행하거나,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의 수령을 대행하는 행위아. “가”에서 “아”까지 열거하는 것 외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거래 상대방의 뜻에 반하여 승낙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수령하게 하는 행위(영 제22조에서 준용하는 제7조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제88조 제20조의 규정은 영 제22조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영 제7조에 규정하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1항 중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통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연쇄판매업자”로,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사업자”는 “통괄자, 권유자 혹은 일반연쇄판매업자”로 변경하기로 한다. 제89조~제96조 [생략](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해야 하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전자적 방법)제97조 법 제42조 제4항의 전자적 방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자정보처리조직(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와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을 받으려는 자 혹은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를 구매하려고 하는 자,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자 또는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의 구매자(이하, 이 조, 제99조에서 제100조까지 및 제106조 제8호에서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이라고 한다)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를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제100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는 방법 중 “가” 또는 “나”에 열거하는 것가.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와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와 접속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나.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의 열람에 제공하고,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이.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조제하는 파일에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것을 교부하는 방법2 전항에 열거하는 방법은 아래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일.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이 파일 기록을 출력함으로써 서면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 파일에 기록된 서면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변경이 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삼. 전항 제1호 “나”에 열거하는 방법은 파일에 기록된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할 내용 또는 기록한 내용을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3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해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교부를 대신하여 해당 서면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제공할 때는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이 해당 사항을 명료하게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해야 하는 서면의 교부에 관계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제98조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나타내야 할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은 아래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조 제1항에 열거하는 방법 중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용하는 것이. 파일 기록 방식(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 취득 시의 설명 및 확인 등)제99조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전조에 열거하는 사항을 나타낼 때,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에게 아래 열거하는 사항(법 제42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제3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설명해야 한다. 일.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이 이 항의 설명 및 제3항의 확인을 받은 다음,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하지 않으면, 동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서면이 교부될 것이.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은 동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면서,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일 것삼. 법 제4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한정한다)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의 구매자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 기록이 되었을 때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의 구매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기록이 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 등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될 것사.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계산기(그 영상면의 최대 지름을 센티미터 단위로 나타낸 수치에서 2.54를 빼고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수치가 5이상인 전자계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제공을 받기 위해 전자계산기를 스스로 조작(해당 제공이 완결될 때까지 조작을 말한다. 제3항 제1호에서 같다)할 수 있는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에 한해,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2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전항의 설명을 할 때,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자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3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의 설명을 한 다음, 아래 열거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일.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이 전자메일의 송수신, 기타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되는 사항을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조작을 스스로 행할 수 있으면서,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이 해당 열람을 위해 필요한 전자계산기 및 전자메일주소(전자메일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이 열람을 위해 필요한 전자계산기에 관계되는 사이버 보안을 확보하고 있을 것삼.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이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이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도 전자메일에 의해 송신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유무 및 해당 송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자의 전자메일주소4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전항의 확인을 할 때,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을 받으려는 자 등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계산기를 스스로 조작하며, 해당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영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웹페이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행해야 한다. 5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이 영 제26조 제1항의 서면 등에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의 성명 및 제1항의 설명 내용을 이해한 내용을 기입함으로써,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얻기로 한다. 이 경우,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기호의 기입, 그 외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의 해당 승낙에 관계되는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6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이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전자메일 송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이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과 동시에 송신해야 한다. 7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의 설명 및 제3항의 확인을 한 다음,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얻었을 때,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을 할 때까지, 해당 승낙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해당 승낙을 서면으로 얻은 경우에는 해당 서면의 사본을 포함한다)을 교부해야 한다. 8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일. 법 제42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이.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2조 제2호에 열거하는 정보처리 용도로 제공하는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계약 또는 특정 권리판매계약의 신청을 받아 행하는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 또는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을 받을 권리의 판매로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특정 계속적 역무에 대해, 법 제4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해야 하는 서면 교부에 관계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승낙의 취득)제100조 영 제26조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아래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중 “가” 또는 “나”에 열거하는 것가.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서 전기통신회로를 통해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영 제46조 제1항의 승낙 또는 동조 제2항의 신청(이하, 이 항에서 “승낙 등”이라고 한다)을 하는 내용을 송신하고, 해당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나.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제98조에 열거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의 열람에 제공하고, 해당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승낙 등을 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이.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조제하는 파일에 승낙 등을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을 교부하는 방법2 전항에 열거하는 방법은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파일 기록을 출력함으로써 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제101조 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전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 방법으로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자 또는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의 구매자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되면서,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자 또는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의 구매자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행하기로 한다. (법 제42조 제5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제102조 법 제42조 제5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제97조 제1항 제2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3조~제105조 [생략](특정 계속적 역무제공에서의 금지행위)제106조 법 제46조 제1항 제4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칠 생략]팔.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때, 아래 열거하는 행위를 하는 것가. 전자적 방법을 제공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에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나.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다. 위협하여 당혹하게 하는 행위(법 제44조 제3항에 규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라.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마.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교부에 대해, 비용 징수, 기타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에 열거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바. 제99조 제3항을 확인 시, 허위, 기타 부정 수단에 의해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사. 제99조 제3항의 확인을 하지 않거나, 또는 확인을 할 수 없는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을 하는 행위아. 허위, 기타 부정 수단에 의해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의 승낙을 대행하거나,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의 수령을 대행하는 행위자. “가”에서 “아”까지 열거하는 것 외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 등의 뜻에 반하여 승낙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되는 사항을 수령하게 하는 행위 (영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7조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제107조 제20조의 규정은 영 제28조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영 제7조에 규정하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준용한다.제108조~제120조 [생략]제121조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서면(이하, 이 조에서 “계약서면”이라고 한다)은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각각 동표 우측 란의 기준에 합치한 것이어야 한다.

|  |  |
| --- | --- |
| 사항 | 기준 |
| 일. 인도된 상품(시설을 이용 및 업무를 제공받을 권리는 제외한다)이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해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에 관한 사항 | 인도된 상품(시설을 이용 및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는 제외한다)이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해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그 부적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 |
| [이/삼 생략] |

[2~5 생략](법 제5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해야 하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전자적 방법)제122조 법 제55조 제3항의 전자적 방법은 아래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자정보처리조직(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와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를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제125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는 방법 중 “가” 또는 “나”에 열거하는 것 가.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와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 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를 접속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나.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의 열람에 제공하고,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다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 상대방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해당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이.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조제하는 파일에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것을 교부하는 방법2 전항에 열거하는 방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일.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이 파일 기록을 출력함으로써 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일 것이. 파일에 기록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삼. 전항 제1호 “나”에 열거하는 방법은 파일에 기록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 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할 내용 또는 기록한 내용을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3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해 제5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서면 교부를 대신하여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제공할 때,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고 하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이 해당 사항을 명료하게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법 제5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해야 하는 서면의 교부에 관계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제123조 영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나타내야 할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은 아래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조 제1항에 열거하는 방법 중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사용하는 것이. 파일 기록 방식(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 취득 시 설명 및 확인 등)제124조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조에 열거하는 사항을 나타낼 때,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업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고 하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에게 아래 열거하는 사항(법 제55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설명해야 한다. 일.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이 이 항의 설명 및 제3항의 확인을 받은 다음, 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하지 않으면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이 교부될 것이. 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면서,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일 것삼. 법 제55조 제2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제 122조 제1항 제1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한정한다)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의 사용에 관한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 기록이 되었을 때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해당 기록이 된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될 것사. 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계산기(그 영상면의 최대 지름을 센티미터 단위로 나타낸 수치에서 2.54를 빼고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수치가 5 이상인 전자계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제공을 받기 위해 전자계산기를 스스로 조작(해당 제공이 완결될 때까지 조작을 말한다. 제3항 제1호에서 같다)할 수 있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에 한해, 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2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항의 설명을 할 때,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3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제1항의 설명을 한 다음, 아래 열거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일.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이 전자메일 송수신, 기타 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되는 사항을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조작을 스스로 행할 수 있으면서, 해당 업무제고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이 해당 열람을 위해 필요한 전자계산기 및 전자메일주소(전자메일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이 열람을 위해 필요한 전자계산기에 관련되는 사이버 보안을 확보하고 있을 것삼.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이 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이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도 전자메일에 의해 송신하는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유무 및 해당 송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전자메일주소4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항의 확인을 할 때,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계산기를 스스로 조작하여,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의 영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웹페이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행해야 한다. 5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이 영 제32조 제1항의 서면 등에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의 성명 및 제1항의 설명내용을 이해한 내용을 기입함으로써, 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얻기로 한다. 이 경우,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기호 기입, 그 외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의 해당 승낙에 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6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이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자메일 송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이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 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과 동시에 송신해야 한다. 7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제1항의 설명 및 제3항의 확인을 한 다음, 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얻었을 때,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때까지, 해당 승낙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해당 승낙을 서면에 의해 얻은 경우에는 해당 서면의 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교부해야 한다. 단, 법 제55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낙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할 수 있다. (법 제5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교부해야 하는 서면의 교부에 관계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승낙의 취득)제125조 영 제32조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아래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가.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 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로부터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영 제32조 제1항의 승낙 또는 동조 제2항의 신청(이하, 이 항에서 “승낙 등”이라고 한다)을 하는 내용을 송신하고, 해당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나.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제23조에 열거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의 열람에 제공하고, 해당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승낙 등을 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이.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조제하는 파일에 승낙 등을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을 교부하는 방법2 전항에 열거하는 방법은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파일 기록을 출력함으로써 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영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제126조 영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전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 방법으로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의 사용에 관한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되면서,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행한다. (법 제55조 제3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제127조 법 제55조 제3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제122조 제1항 제2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한다.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서의 금지행위)제128조 법 제56조 제1항 제4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팔 생략]구. 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할 때,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는 것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에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에 관계되는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나.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다. 위협하여 당혹하게 하는 행위(법 제52조 제3항에 규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라.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마. 법 제5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교부에 대해, 비용 징수, 그 외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에 열거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바. 제124조 제3항을 확인 시, 허위, 기타 부정 수단에 의해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사. 제124조 제3항의 확인을 하지 않거나, 또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에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하는 행위아. 허위, 기타 부정 수단에 의해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의 승낙을 대행하거나,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의 수령을 대행하는 행위자. “가”에서 “아”까지 열거하는 것 외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의 뜻에 반하여 승낙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수령하게 하는 행위(영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영 제7조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제129조 제20조의 규정은 영 제33조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영 제7조에 규정하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1항 중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 및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사업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로 변경하기로 한다. 제130조/제131조 [생략](방문구매에서의 서면 교부 등)제132조 법 제58조의 7 제1항 제7조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팔 생략][조를 삭제한다]제133조 법 제58조의 7 제1항 또는 법 제58조의 8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이하, 이 조에서 “서면”이라고 한다)은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각각 동표 우측 란의 기준에 합치한 것이어야 한다. [표 생략][2/3 생략]제134조 법 제58조의 7 제1항 또는 제58조의 8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하는 법 제58조의 7 제1항 제5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표 좌측 란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일. 물품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58조의 8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58조의 7 제1항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 등(법 제58조의 14 제1항의 신청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9조에서 같다)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물품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나~바 생략] |

2 전조 및 법 제58조의 7 제1항 제6호에 열거하는 사항은 빨간 틀 안에 빨간 글자로 기재해야 한다. (법 제58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해야 하는 서면의 교부에 관계되는 전자적 방법)제135조 법 제58조의 7 제2항의 전자적 방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자정보처리조직(구매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와 신청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를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제138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는 방법 중 “가” 또는 “나”에 열거하는 것가. 구매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와 신청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를 접속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해당 신청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나. 구매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신청한 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해당 신청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이.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조제하는 파일에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것을 교부하는 방법2 전항에 열거하는 방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일. 신청한 자가 파일 기록을 출력함으로써 서면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 파일에 기록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변경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삼. 전항 제1호 “나”에 열거하는 방법은 파일에 기록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구매업자의 사용에 관한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할 내용 또는 기록한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3 구매업자는 제1항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해 법 제58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교부를 대신하여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제공할 때는 신청한 자가 해당 사항을 명료하게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법 제58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해야 하는 서면의 교부에 관계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제136조 영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나타내야 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조 제1항에 열거하는 방법 중 구매업자가 사용하는 것이. 파일 기록 방식(법 제58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 취득 시의 설명 및 확인 등)제137조 구매업자는 전조에 열거하는 사항을 나타낼 때는 신청한 자에게 아래 열거하는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일. 신청한 자가 이 항의 설명 및 제3항의 확인을 받은 다음, 법 제58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하지 않으면 동조 제1항의 서면일 교부될 것이. 법 제58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은 동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면서, 신청한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일 것삼. 법 제58조의 7 제1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제135조 제1항 제1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한정한다)에 의해 제공할 경우에는 신청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 기록이 되었을 때 해당 신청한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기록이 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철회 등을 할 수 없게 될 것사. 법 제58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계산기(그 영상면의 최대 지름을 센티미터 단위로 나타낸 수치에서 2.54를 빼고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수치가 5이상인 전자계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제공을 받기 위해 전자계산기를 스스로 조작(해당 제공이 완결될 때까지 조작을 말한다. 제3항 제1호에서 같다)할 수 있는 신청을 한 자에 한해, 법 제58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2 구매업자는 전항의 설명을 할 때, 신청한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3 구매업자는 제1항의 설명을 한 다음, 아래 열거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일. 신청한 자가 전자메일의 송수신, 그 외 법 제58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조작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서, 해당 신청한 자가 해당 열람을 위해 필요한 전자계산기 및 전자메일주소(전자메일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 신청한 자가 열람을 위해 필요한 전자계산기에 관련되는 사이버 보안을 확보하고 있을 것삼. 신청한 자가 법 제58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해당 신청한 자가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도 전자메일에 의해 송신하는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유무 및 해당 송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전자메일주소4 구매업자는 전항의 확인을 할 때, 신청한 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계산기를 스스로 조작하고, 해당 구매업자의 영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웹페이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5 구매업자는 신청한 자가 영 제35조 제1항의 서면 등에 해당 신청한 자의 성명 및 제1항의 설명 내용을 이해한 내용을 기입함으로써, 법 제58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얻기로 한다. 이 경우, 구매업자는 기호의 기입, 그 외 해당 신청을 한 자의 해당 승낙에 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6 구매업자는 신청한 자가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전자메일의 송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한 자가 미리 지정한 자에게 법 제58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송신해야 한다. 7 구매업자는 제1항의 설명 및 제3항의 확인을 한 다음, 법 제58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얻었을 때, 신청한 자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을 할 때까지 해당 승낙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해당 승낙을 서면으로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 서면의 사본을 포함한다)d을 교부해야 한다. (법 제58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해야 하는 서면의 교부에 관계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승낙의 취득)제138조 영 제35조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아래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중 “가” 또는 “나”에 열거하는 것가. 신청한 자의 사용에 관한 전자계산기에서 전자통신회선을 통해 구매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영 제35조 제1항의 승낙 또는 동조 제2항의 신청(이하, 이 항에서 “승낙 등”이라고 한다)을 하는 내용을 송신하고, 해당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나. 구매업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제136조에 열거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신청한 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해당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승낙 등을 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이. 전자적 기록매체를 가지고 조제하는 파일에 승낙 등을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을 교부하는 방법2 전항에 열거하는 방법은 구매업자가 파일 기록을 출력함으로써 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영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제139조 영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전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 방법으로 신청한 자의 사용에 관련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되면서, 해당 신청한 자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행하기로 한다. (법 제58조의 7 제3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제140조 법 제58조의 7 제3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제135조 제1항 제2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한다. (방문구매에서의 계약체결 시 교부서면의 기재사항)제141조 법 제58조의 8 제2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 구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와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 매매계약 체결을 담당한 자의 성명삼. 매매계약 체결 연월일사. 물품명오. 물품의 특징육. 물품 또는 그 부속품에 상표, 제조자명 혹은 판매자명의 기재가 있을 때 또는 형식이 있을 때는 해당 상표, 제조자명 혹은 판매자명 또는 형식칠.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내용팔. 전호에 열거하는 것 외 특약이 있을 때는 그 내용구.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대금의 전부를 지불하고, 모든 물품의 인도를 받았을 때가 아닐 때는 법 제58조의 7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법 제58조의 8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의 7 제2항 및 제3항에 관계되는 규정의 준용)제142조 제135조에서 제140조까지 규정은 법 제58조의 8 제3항에서 법 제58조의 7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및 “법 제58조의 7 제1항”은 “법 제58조의 8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신청한 자”는 “매매계약 상대방”으로 변경한다. 제143조/제144조 [생략](제3자 물품인도에 대한 통지방법)제145조 [생략]2 [생략][일/이 생략]삼. 해당 계약의 상대방이 다음 호의 연월일에 법 제58조의 7 제1항 또는 제58조의 8 제1항 혹은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및 구매업자가 법 제58조의 10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거나, 또는 구매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여, 이들로 인해 전호의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계약의 해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해당 계약 상대방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사. 구매업자가 해당 물품의 매매계약 상대방에게 해당 계약에 관계되는 법 제58조의 8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을 교부한 연월일(그 연월일 전에 법 제58조의 7 제1항의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교부한 연월일)[오~십 생략][3~6 생략](방문구매에서의 금지행위)제146조 법 제58조의 12 제1항 제4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오 상동]육. 법 제58조의 7 제2항(법 제58조의 8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법 제58조의 7 제1항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법 제58조의 8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때, 아래 열거하는 행위를 할 것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고객 또는 매매계약 상대방에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에 관계되는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나. 고객 또는 매매계약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법 제58조의 10 제1항에 규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다. 위협하여 당혹하게 하는 행위(법 제58조의 10 제3항에 규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라.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마. 법 제58조의 7 제1항 또는 법 제58조의 8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교부에 대해, 비용 징수, 그 외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에 열거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바. 제137조 제3항의 확인 시, 허위, 그 외 부정 수단에 의해 고객 또는 매매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사. 제137조 제3항의 확인을 하지 않거나, 또는 확인을 할 수 없는 고객 또는 매매계약 상대방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아. 허위, 기타 부정 수단에 의해 고객 또는 매매계약 상대방의 승낙을 대행하거나,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의 수령을 대행하는 행위자. “가”에서 “아”까지 열거하는 것 외 고객 또는 매매계약 상대방의 뜻에 반하여 승낙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사항을 수령하게 하는 행위(영 제36조에서 준용하는 영 제7조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제147조 제20조의 규정은 영 제36조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제7조에 규정하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1항 중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 및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사업자”는 “구매업자”로 변경한다. 제148조/제149조 [생략](통상 매매계약 상대방이 물품을 처분할 의사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50조 영 제37조 제4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상대방이 주거에서 퇴거하기로 한 경우로 한다. (주무대신에 대한 신청 절차)제151조 [생략](모법인 등 또는 관련법인 등)제152조 영 제40조의 표의 비고 제1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인 등(동호에 규정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단, 재무상 또는 영업상 혹은 사업상의 관계에서 보아 다른 법인 등의 의사결정기관(동호에 규정하는 의사결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지배하고 있지 않음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삼 생략]2 영 제40조의 표 비고 제2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재무상 또는 영업상 혹은 사업상의 관계에서 보아 법인 등(해당 법인 등의 자법인 등(동표 비고 제1호에 규정하는 자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포함한다)이 자법인 등 외 다른 법인 등의 재무 및 영업 또는 사업의 방침결정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없음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삼 생략](법 제66조의 3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서류)제153조 [생략]양식 제1(제22조 및 제66조 관련)[생략](비고)일. [생략]이. 권리판매계약의 경우에는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성령”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전화권유판매의 경우에는 성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써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생략]삼. [생략]사. 역무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전화권유판매의 경우에는 성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생략]양식 제2 (제90조 관련)[생략](비고)일. 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역무제공을 받을 권리를 판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생략]이. 역무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생략]양식 제3 (제109조 관련)[생략](비고)일. [생략]이. 특정권리 판매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생략]양식 제4(제131조 관련)[생략](비고)일. 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역무제공을 받을 권리를 판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생략]이. 역무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생략]양식 제5 (제145조 관련)[생략]양식 제6 (제145조 관련)[생략]양식 제7 (제149조 관련)[생략]양식 제8 (제151조 관련)[생략] | 목차제1장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1. 정의(제1조-제2조)
2. 방문판매(제3조-제7조의 5)
3. 통신판매(제8조-제16조의 3)
4. 전화권유판매(제17조-제23조의 3)
5. 잡칙(제23조의 4)

제2장 연쇄판매거래(제24조-제31조의 4)제3장 연쇄 계속적 역무제공(제31조의 5-제39조의 2의 3)제4장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제39조의3-제46조의 4)제5장 방문구매(제47조-제56조)제6장 잡칙(제57조-제59조)잡칙(유인방법에 관계되는 전자적 방법)[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방문판매에서 서면의 교부 등)제3조 법 제4조 제6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구 좌동]제4조 법 제5조 제2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일.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와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체결을 담당한 자의 성명삼.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체결 연월일사. 상품명 및 상품의 상표 또는 제조자명오. 상품에 형식이 있을 때는 해당 형식육. 상품 수량칠. 인도된 상품이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한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판매업자 책임에 대해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내용팔.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내용 구. 전2호에 열거하는 것 외 특약이 있을 때는 그 내용제6조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이하, 이 조에서 “서면”이라고 한다)은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각각 동표 우측 란의 기준에 합치한 것이어야 한다. [표 좌동][2/3 좌동]제7조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에 기록하는 법 제4조 제5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항, 제3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일. 상품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5조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 등(법 제9조 제1항의 신청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 5에서 같다)는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상품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나~사 좌동] |
| 이. 권리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5조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4조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권리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나~아 생략] |
| 삼. 역무제공계약의 신청철회 또는 역무제공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5조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4조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 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역무제공계약의 신청철회 또는 역무제공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나~사 좌동] |

[2~6 좌동][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제6조의 2/제6조의 3 [좌동](방문판매에서의 금지행위)제7조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의 각호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사 좌동]오. 방문판매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에 열거하는 서면으로서, 구매자 또는 역무제공을 받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구매자 등”이라고 한다)가 생명보험에 관한 계약 또는 생명공제에 관한 계약(이하, “생명보험계약 등”이라고 한다)의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가 됨에 동의하는 내용이 기재된 것(해당 생명보험계약 등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이 빨간 틀 안에 일본산업규격 Z8305에 규정하는 8포인트 이상 크기의 빨간 글씨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해당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에 관한 서명 또는 날인과는 별도로 해당 생명보험계약 등에 관한 서명 및 날인을 하는 칸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 구매자 등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할 것가.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나. [좌동][육~팔 좌동][호를 추가한다](업무를 통괄하는 자에 준하는 자)제17조의 2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1976년 정령 제295호.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조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부장, 차장, 과장, 기타 어떤 명칭을 가진 자인지 불문하고, 이들의 호에 규정하는 업무를 통괄하는 자의 직무를 일상적으로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 기타 실질적으로 해당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한다. (영 제3조의 4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제7조의 3 영 제3조의 4의 해당 기타 법인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법인가. 해당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영 제3조의 4의 사용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대표권을 가진 임원인 법인[나/다 좌동]이.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법인가. [좌동]나. 해당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임원(영 제3조의 4의 임원을 말한다. “다” 및 “라”에서 같다) 또는 그 사용인이 대표권을 가진 임원인 법인[다/라 좌동]삼. [좌동][2/3 좌동]제7조의 4/제7조의 5 [좌동](통신판매에 대한 광고)제8조 법 제11조 제6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이 생략]삼.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외국법인 또는 외국에 주소를 가진 개인으로서, 국내에 그 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소, 사무소 및 기타 이들에 준하는 것(이하, 이 호, 제25조 제3호 및 제40조 제3호에서 “사무소 등”이라고 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 등의 소재장소 및 전화번호[사~십 좌동]제9조 [좌동]제10조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호 및 제8조 제4호에 정하는 구매자 또는 역무제공을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경우에는 그 금전을 전부 표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 경우 법 제11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정하는 사항(제8조 제6호에서 제10호까지 열거하는 사항과 법 제15조의 3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도는 매매계약 해제(이하, 이 조에서 “신청철회 등”이라고 한다)의 가부, 신청철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철회 등이 가능한 기간, 그 외 신청철회가 가능해지는 조건 및 상품 또는 특정권리의 거래 또는 반환에 요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구매자 또는 역무제공을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전의 전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정하는 사항(제8조 제4호 및 제6호에서 제10호까지 열거하는 사항 및 법 제15조의 3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철회 등의 가부, 신청철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철회가 가능한 기간, 그 외 신청철회가 가능해지는 조건 및 상품 또는 특정권리의 거래 또는 반환에 요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에 관한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불이 상품인도 혹은 권리이전 또는 역무제공 전인 경우에는 상품 혹은 권리의 대금 또는 역무 대가의 지불시기,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관한 상품을 송부하지 않을 경우 혹은 권리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역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3호에 열거하는 사항 및 인도된 상품이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해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판매업자가 그 부적합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4 좌동](과대광고 등의 금지)제11조 [생략](전자적 방법)제11조의 2 법 제12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전자적 방법(이하, 단지 “전자적 방법”이라고 한다)은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것으로 하며, 영 제1조 제1호의 전자적 방법은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이 좌동]삼. 전호에 규정하는 것 외 그 수신하는 자를 특정하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용되는 전기통신(전기통신사업법(1976년 법률 제86호)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을 말한다)을 송신하는 방법(타인에게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조의 3/제11조의 4 [좌동](기록의 보존)제11조의 5 법 제12조의 3 제3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전자적 방법은 제외한다)에 의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거나, 또는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승낙 또는 청구마다 해당 승낙 또는 청구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이하, 이 조, 제11조의 10, 제27조의 3 및 제42조의 3에서 “서면 등”이라고 한다). 단,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해당 승낙을 얻거나, 또는 청구를 받기 위해 정형적인 내용을 표시하고 있으면서, 해당 승낙을 얻거나, 또는 청구를 받았을 때 해당 승낙 또는 청구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일람성 있는 전자적 기록으로 자동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을 이용한 경우로서, 해당 정형적인 내용의 표시에 있어서, 해당 전자계산기의 조작이 해당 상대방에게 통신판매 전자메일 광고를 하는 승낙하거나, 또는 청구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승낙을 얻거나, 또는 청구를 받기 위해 표시한 정형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서면 등 및 해당 내용이 표시된 시기를 나타내는 서면 등이. [좌동]2 [좌동]제11조의 6~제13조 [좌동](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제40조 법 제13조 제2항의 전자적 방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중 “가”, “나” 또는 “다”에 열거하는 것[가~다 좌동]이. 자기디스크, CD-ROM, 기타 이들에 준하는 방법에 의해 일정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해 둘 수 있는 것으로서 조제하는 파일에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것을 교부하는 방법[2/3 좌동][표제를 추가한다]제15조 [좌동][조를 추가한다](통신판매에서의 금지행위)제16조 [좌동](법 제15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제16조의 2 법 제15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지를 명 받은 업무의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 (신청철회 등에 대한 특약을 표시하는 방법)제16조의 3 [좌동](전화권유판매에서의 서면 교부 등)제17조 법 제18조 제6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일~구 좌동]제18조 법 제19조 제2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일.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와 법인은 대표자 성명이.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체결을 담당한 자의 성명삼.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체결 연월일 사. 상품명 및 상품의 상표 또는 제조자명오. 상품에 형식이 있을 때는 해당 형식육. 상품의 수량칠. 인도된 상품이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해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의 판매업자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내용팔.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내용구. 전2호에 열거하는 것 외 특약이 있을 때는 그 내용제20조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이하, 이 조에서 “서면”이라고 한다)은 다음 표 좌측 란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각각 동표 우측 란의 기준에 합치한 것이어야 한다. [표 좌동][2/3 좌동]제20조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하는 법 제18조 제5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항, 제3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일. 상품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19조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18조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 등(법 제24조 제1항의 신청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는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상품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나~사 좌동] |
| 이. 권리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19조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18조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 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권리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나~아 좌동] |
| 삼. 역무제공계약의 신청철회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19조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18조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 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역무제공계약의 신청철회 또는 역무제공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나~사 좌동] |

[2~6 생략][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전화권유판매에서 승낙 등의 통지)제21조 법 제20조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육 좌동]제22조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신청한 자에게 서면에 의해 통지할 때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해야 한다.[일/이 좌동]2 [생략][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제22조의 2/제23조의 3 [좌동](전화권유판매에서의 금지행위)제23조 법 제22조 제1항 제5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의 각호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육 좌동][호를 추가한다](법 제23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제23조의 이 법 제23조의 2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지를 명 받은 업무의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3조의 3/제23조의 4 [좌동](특정이익)제24조 법 제33조 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중 하나로 한다. 일. 상품(법 제33조 제1항의 상품을 말한다. 다음 조, 제24조의 3, 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의 4를 제외하고,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재판매, 수탁판매 혹은 판매를 알선하는 다른 사람 또는 동종 역무의 제공 혹은 역무의 제공을 알선하는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거래요금에 의해 발생하는 것일 것[이/삼 좌동]제27조 [좌동](과대광고 등의 금지)제27조 법 제36조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오 좌동]육. 연쇄판매업에 관한 연쇄판매거래에 대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법 제40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및 법 제40조의 2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제27조~제29조 [좌동]제30조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서면(이하, 이 조에서 “계약서면”이라고 한다)에는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표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사항 | 내용 |
| [일~삼 좌동] |
| 사. 법 제4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에 관한 연쇄판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오~칠 좌동] | [가/나 좌동]다. “가”에 기재한 사항에 의해 연쇄판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가 되기 전에, 연쇄판매를 하는 자가 연쇄판매가입자에게 이미 연쇄판매업에 관한 상품판매 등을 했을 때,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쇄판매가입자는 상품판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1)~(3) 좌동](4) 영 제10조의 3에서 정할 때[라~바 생략] |

[2~4 좌동][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연쇄판매거래에서의 금지행위)제31조 법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삼 좌동]사. 그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가 제37조에 규정하는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 경우, 그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 경우, 그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것을 부추기거나, 또는 동조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 혹은 허위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할 것을 부추기는 것[오~십일 좌동][호를 추가한다](영 제10조의 2에서 준용하는 제3조의 4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제31조의 2 제7조의 3의 규정은 영 제10조의 2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영 제3조의 4에 규정하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의 3 제1항 중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통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연쇄판매업자”로,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사업자”는 “통괄자, 권유자 혹은 일반연쇄판매업자”로 변경하기로 한다. 제31조의 3~제36조 [좌동][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제37조~제38조 [좌동](특정 계속적 역무제공에서의 금지행위)제39조 법 제46조 제1항 제4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칠 생략][호를 추가한다](영 제13조의 2에서 준용하는 제3조의 4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제109조의 2 제7조의 3의 규정은 영 제13조의 2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영 제3조의 4에 규정하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준용한다.제109조의 2의 2~제44조 [좌동]제45조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서면(이하, 이 조에서 “계약서면”이라고 한다)은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각각 동표 우측 란의 기준에 합치한 것이어야 한다.

|  |  |
| --- | --- |
| 사항 | 기준 |
| 일. 인도된 상품(시설을 이용 및 업무를 제공받을 권리는 제외한다)이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해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에 관한 사항 | 인도된 상품(시설을 이용 및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는 제외한다)이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해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판매업자가 그 부적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 |
| [이/삼 좌동] |

[2~5 좌동][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서의 금지행위)제46조 법 제56조 제1항 제4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팔 좌동][호를 추가한다](영 제16조의 2에서 준용하는 영 제3조의 4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제46조의 2 제7조의 3의 규정은 영 제16조의 2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영 제3조의 4에 규정하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의 3 제1항 중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 및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사업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로 변경하기로 한다. 제46조의 3/제46조의 4 [좌동](방문구매에서의 서면 교부 등)제47조 법 제58조의 7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팔 좌동]제48조 법 제58조의 8 제2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 구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와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 매매계약 체결을 담당한 자의 성명삼. 매매계약 체결 연월일사. 물품명오. 물품 특징육. 물품 또는 그 부속품에 상표, 제조자명 혹은 판매자명의 기재가 있을 때 또는 형식이 있을 때는 해당 상표, 제조자명 혹은 판매자명 또는 형식칠.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내용팔. 전호에 열거하는 것 외 특약이 있을 때는 그 내용구. 매매계약을 해제했을 때, 대금의 전부를 지불하면서, 모든 물품 인도를 받았을 때가 아닐 때는 법 제58조의 7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제49조 법 제58조의 7 또는 법 제58조의 8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이하, 이 조에서 “서면”이라고 한다)은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각각 동표 우측 란의 기준에 합치한 것이어야 한다. [표 좌동][2/3 좌동]제50조 법 제58조의 7 또는 제58조의 8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하는 법 제58조의 7 제5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표 좌측 란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 우측 란에 열거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  |
| --- | --- |
| 일. 물품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58조의 8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법 제58조의 7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자 등(법 제58조의 14 제1항의 신청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같다)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물품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나~바 좌동] |

2 전조 및 법 제58조의 7 제6호에 열거하는 사항은 빨간 틀 안에 빨간 글자로 기재해야 한다. [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조를 추가한다]제51조/제52조 [좌동](제3자 물품인도에 대한 통지방법)제53조 [좌동]2 [좌동][일/이 좌동]삼. 해당 계약의 상대방이 다음 호의 연월일에 법 제58조의 7 또는 제58조의 8의 서면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및 구매업자가 법 제58조의 10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거나, 또는 구매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협함으로써 당혹하여, 이들로 인해 전호의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계약의 해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해당 계약 상대방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사. 구매업자가 해당 물품의 매매계약 상대방에게 해당 계약에 관계되는 법 제58조의 8의 서면을 교부한 연월일(그 연월일 전에 법 제58조의 7의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교부한 연월일)[오~십 좌동][3~6 좌동](방문구매에서의 금지행위)제54조 법 제58조의 12 제1항 제4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의 각호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일~오 좌동][호를 추가한다](영 제16조의 4에서 준용하는 영 제3조의 4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제54조의 2 제7조의 3의 규정은 영 제16조의 4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제3조의 4에 규정하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의 3 제1항 중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 및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사업자”는 “구매업자”로 변경한다. 제54조의 3/제55조 [좌동](통상 매매계약 상대방이 물품을 처분할 의사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6조 영 제16조의 5 제4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상대방이 주거에서 퇴거하기로 한 경우로 한다. (주무대신에 대한 신청 절차)제57조 [좌동](모법인 등 또는 관련법인 등)제58조 영 제17조의 2의 표의 비고 제1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인 등(동호에 규정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단, 재무상 또는 영업상 혹은 사업상의 관계에서 보아 다른 법인 등의 의사결정기관(동호에 규정하는 의사결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지배하고 있지 않음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삼 좌동]2 영 제17조의 2의 표 비고 제2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재무상 또는 영업상 혹은 사업상의 관계에서 보아 법인 등(해당 법인 등의 자법인 등(동표 비고 제1호에 규정하는 자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포함한다)이 자법인 등 외 다른 법인 등의 재무 및 영업 또는 사업의 방침결정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없음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삼 좌동](법 제66조의 3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서류)제59조 [좌동]양식 제1(제7조의 5 및 제23조의 3 관련)[좌동](비고)일. [좌동]이. 권리판매계약의 경우에는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성령”이라고 한다) 제7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전화권유판매의 경우에는 성령 제23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써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좌동]삼. [좌동]사. 역무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7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전화권유판매의 경우에는 성령 제23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좌동]양식 제2 (제31조의 4 관련)[좌동](비고)일. 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역무제공을 받을 권리를 판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31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생략]이. 역무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31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생략]양식 제3 (제39조의 2의 3 관련)[좌동](비고)일. [좌동]이. 특정권리 판매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39조의 2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좌동]양식 제4(제46조의 4 관련)[좌동](비고)일. 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역무제공을 받을 권리를 판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46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좌동]이. 역무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성령 제46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근거하는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좌동]양식 제5 (제53조 관련)[좌동]양식 제5의 2 (제53조 관련)[좌동]양식 제6 (제55조 관련)[좌동]양식 제7 (제57조 관련)[좌동] |
| 비고 – 표에서 [ ] 기재는 주석이다.  |

부칙

(시행기일)

제1조 이 명령은 소비자 피해의 방지 및 그 회복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부칙 제4조에서 “개정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1조 제3호에 열거하는 규정의 시행일(2023년 6월 1일. 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이 명령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다음 조에서 부착 제8조까지 “신 성령”이라고 한다)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제48조에서 제53조까지 및 제58조에서 제61조까지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받는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신청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신 성령 제15조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신 성령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규정 및 신 성령 제55조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신 성령 제48조에서 제53조까지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 신 성령 제81조에서 제86조까지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개정법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다음 조부터 부칙 제7조까지 “신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연쇄판매거래에 대한 계약에 대해 적용한다.

제5조 신 성령 제97조에서 제102조까지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신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계약 또는 동항 제2호에 규정하는 특정권리 판매계약에 대해 적용한다.

제6조 신 성령 제122조에서 제127조까지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신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대한 계약에 대해 적용한다.

제7조 신 성령 제135조에서 제140조까지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신법 제58조의 4에 규정하는 구매업자가 받는 매매계약의 신청에 대해 적용한다.

제8조 신 성령 제142조에서 변경하여 적용하는 신 성령 제135조에서 제140조까지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매매계약에 대해 적용한다.